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885

발의연월일: 2025. 3. 13.

발 의 자:정일영·임광현·안도걸

박상혁 • 임호선 • 한민수

김윤덕 • 이학영 • 박희승

박지원 · 허 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 압력이 커지고 있음.

이로 인해 기업의 국내 투자 위축과 국내 일자리 감소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어 국내 주요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대책이 요구됨.

이에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여 내국인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관련제품, 미래형 이동·운송 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함.

또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의 경우, 기존의 이월공제 외에도 신청에 따라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 100조의35, 제144조의2, 제144조의3, 제144조의4, 제144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 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중 "이 조"를 "이 조 및 제144조의2"로 한다. 제2장에 제10절의6(제100조의3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절의6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35(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① 제 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이하 국가전략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관련제품, 미래형 이동·운송 수단, 바이오의약품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를 생산하여 2035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그 생산비용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재화를 생산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재화가 국가전략기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의하여 제조될 것

- 2. 해당 재화의 최종 제조공정이 국내에 소재한 제조시설에서 이루 어질 것
- 3. 해당 재화가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될 것
-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세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별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다만, 해당 과세연도별 법인세가 해당 과세연도 공제 총액을 넘지못하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한도를 정한다.
- ③ 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중에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투자세액공제액은 제1항에따라 공제받는 금액에서 차감한다.
-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세액공제대상 생산수량 및 생산관련비용을 보고하여야 하고 세 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생산세액공제대상 생산수량의 보고, 생산관련비용의 산정 및 보고, 재료비 중 국내제조

부품·소재·원재료 재료비 비중의 산정,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액의 산정, 세액공제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제100조의35의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제14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00조의35제1항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제100조의35제1항에 따라 공제할 세액보다 적어서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과, 제100조의35제2항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144조의2 및 제14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4조의2(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환급 특례) ① 2028 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 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 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 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미공제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할 수 있다.

- ②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제100조의35제1항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미공제금액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 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은 자 또는 제144조의3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의 환급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⑥ 내국인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미공제금액에 대하여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 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⑦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미공제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4조의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미공제금액 환급 권리의 양도 특례) ① 제144조의2에 따른 미공제금액의 환급에 관한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 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 제144조의4 및 제144조의5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4조의4(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에 대한 환급 특례) ① 203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에 대하여 제100조의35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미공제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할 수 있다.
 - ② 203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제100조의35제1항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미공제금액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

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⑤ 내국인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미공제금액에 대하여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미공제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4조의5(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에 대한 미공제금액 환급 권리의 양도 특례) ① 제144조의4에 따른 미공제금액의 환급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 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 례) 제100조의3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 제3조(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환급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의2 및 제14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4조(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에 대한 환급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의4 및 제14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생산하고 국내에서 사용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 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 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 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 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 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 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 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공제금액 2.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 가. -----

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 1) (생략)
-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3) (생략) 나. (생략) 3. (생략) ② ~ ⑤ (생략) <u><신 설></u>

<신 설>

_
1) (현행과 같음)
2)
이 조 및 제144조의2
_
3) (현행과 같음)

- 3)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 3. (현행과 같음)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절의6 국가전략기술사업 국 내생산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35(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 제) 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 른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이하 국 가전략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 정수소 관련제품, 미래형 이동 ·운송 수단, 바이오의약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를 생산하여 2035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그 생산비용의 100분의 2 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연도의 소 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 해당 재화가 국가전략기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의하여 제조될 것
- 2. 해당 재화의 최종 제조공정이 국내에 소재한 제조시설에서 이루어질 것
- 3. 해당 재화가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될 것
-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세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별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에 대한 법인세,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별 법인세가 해당 과세연도병법인세가 해당 과세연도병법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한도를 정한다.

③ 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제24 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중에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감 가상각비에 상당하는 투자세액 공제액은 제1항에 따라 공제받 는 금액에서 차감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 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생산세액공제대상 생 산수량 및 생산관련비용을 보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① (생략) <신 설>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 ③ (생 략) <신 설>

고하여야 하고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정을 적용할 때 생산세액공제 대상 생산수량의 보고, 생산관 련비용의 산정 및 보고, 재료비 중 국내제조 부품・소재・원재 료 재료비 비중의 산정, 감가상 각비 상당액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액의 산정, 세액공제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①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 에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 액공제와 제100조의35의 국가 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 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⑤ 제100조의35제1항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 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해당 <신 설>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제1 00조의35제1항에 따라 공제할 세액보다 적어서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과, 제100조의35제2항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의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144조의2(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환급 특례)
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미공제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금

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국 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할 수 있다.

②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제100조의35제1 항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미공제금액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미공 제금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인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게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은 자 또는 제 144조의3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의 환급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5년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한 에 살 세액으로 본다.

- ⑥ 내국인이 제1항부터 제4항 까지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미공제금액에 대하여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①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미공제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44조의3(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미공제금액 환급 권리의 양도 특례) ① 제 144조의2에 따른 미공제금액의 환급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

<신 설>

<신 설>

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 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 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제144조의4(국가전략기술사업 국 내생산에 대한 환급 특례) ① 203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 세연도까지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에 대하여 제100조의 35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 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 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 한 <u>부분에 상당하는</u> 금액(이하 이 조에서 "미공제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국세기본 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 할 수 있다.

② 203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제100조의35제1 항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미 공제금액에 대하여는 그 금액 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국세 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환급 세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 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미공 제금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인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게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⑤ 내국인이 제1항부터 제4항 까지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미공제금액이 대하여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미공제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44주의5(국가저략기숙사업 국

제144조의5(국가전략기술사업 국 내생산에 대한 미공제금액 환

<신 설>

급 권리의 양도 특례) ① 제 144조의4에 따른 미공제금액의 환급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 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 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 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